

## 제 13 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

### 제 13.1 조 목적

무역관계에 있어 자유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며,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 금지, 경쟁정책의 이행 및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양해한다.

### 제 13.2 조 이행

1.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한다.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.
2.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.
3. 양 당사국 경쟁당국의 집행 정책은 투명성, 시의 적절성,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.
4.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에 규정된 모든 면제가 투명하고 공공정책 또는 공익을 근거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.

### 제 13.3 조 협력

1.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자국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.
2. 이에 따라, 양 당사국은 각각의 경쟁법 및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보, 협의, 기술지원 및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협력한다.
3.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그 당사국의 중요한 이해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러한 조정은 관련 경쟁당국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.

### 제 13.4 조 13-1

## 통보

1.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집행 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대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,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집행 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해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영어로 통보한다.
2. 양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, 통보는 집행 활동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.

## 제 13.5 조 협의

1.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, 그리고 각 당사국이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을 개발, 유지 및 집행할 자율권을 저해함이 없이, 각 당사국은,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이 제기한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.
2.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.

## 제 13.6 조 기술지원

양 당사국은 경험 교환,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경쟁 문화의 촉진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분야에서 기술지원을 서로 제공할 수 있다.

## 제 13.7 조 비밀유지

1.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양 당사국 각각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. 다만, 이는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각 당사국의 비밀유지 규칙 및 기준과 양립가능해야 한다.
2.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며, 정보를 제공하는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떠한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

## 제 13.8 조 13-2

## 소비자 보호에 관한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과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. 이에 따라, 양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해 협의, 기술지원 및 자국의 소비자보호법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어느 한쪽 당사국의 중대한 이해가 영향을 받는 적절한 사안에 대해 협력한다.
2.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대응하여 조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며, 그러한 당국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을 배제하지도 아니한다.
3. 각 당사국은, 상호 관심 분야에서 자국의 중요 이해관계에 합치되게, 자국 소비자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효과적인 협력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.

## 제 13.9 조 공기업과 지정독점

1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 및/또는 지정 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2. 양 당사국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이 그들 각각의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반경쟁적 관행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. 다만, 이 규정의 적용은 공기업 및 지정독점에 부여된 특정 공공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
## 제 13.10 조 분쟁해결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.

## 제 13.11 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과 그 이행 규정 및 그 개정 사항, 그리고

나. 콜롬비아의 경우, 1959년의 법률 제155호, 2009년의 법률 제1340호 및 1992년의 포고령 제2153호 및 그들의 이행 규정과 그 개정사항

**소비자보호법**이란 다음을 말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「소비자기본법」, 「표시 ·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그들의 이행 규정과 그 개정사항, 그리고

나. 콜롬비아의 경우, 헌법 제78조와 제333조, 1982년의 포고령 제3466호(소비자보호법) 및 그들의 이행 규정과 그 개정사항

**반경쟁적 관행**이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영업 행위 또는 거래를 말한다.

가. 경쟁의 방해, 제한 또는 왜곡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 간 합의 및 기업단체의 결정

나. 하나 이상의 기업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, 그리고

다. 특히 독점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서 효과적인 경쟁을 현저히 방해 하는 기업 합병 또는 다른 구조적 결합, 그리고

**경쟁당국**이란 다음을 말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
나. 콜롬비아의 경우, 상공업감독원, 금융감독원 및 특정 사안의 경우 민간항공 특별행정단,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